

제117회 임시이사회

2016. 10. 6.(목)

심 의 안 건



순서

1. 서울연구원정관 일부개정(안)	1
2.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3
3.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5
4.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7
5.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9

서울연구원정관 일부개정(안)

1. 의결주문

서울연구원정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6. 9. 9.)에 따라 근로자이사제 도입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공기업담당관-8619,2016.07.28.)에 따라 이사회 심의사항 추가

3. 주요내용

- 근로자이사제 도입(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 현행 이사 12인 이내에 근로자이사 포함으로 개정
 - 근로자이사는 원장이 별도로 규정하여 직원 중에서 선출하고 서울특별시장 임명
 -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3년(연임가능),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이사 임기도 자동 종료
- 안전분야 사업의 외주화에 대해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명문화(안 제23조제9호 신설)
 -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4. 시 행 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임원) ① 연구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이사 12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포함) 감사 2인 원장 1인</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②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p>	<p>제13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이사장 1인 이사 12인 이내(이사장, 원장, <u>근로자이사 포함</u>) 감사 2인 원장 1인 <u>근로자이사 1인</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이사의 선임) ① <u>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임의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히 이사가 된다.</u> 1. ~ 3. (생략)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4조(이사의 선임) ① <u>이사는 당연직이사, 임의직이사, 근로자이사로 구분하되, ……………</u> …………….</p> <p>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근로자이사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출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u></p>
<p>제15조(임원의 임기) ①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5조(임원의 임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근로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근로자 투표 등 선출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u></p>
<p>제23조(이사회 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 8. (생략) 9. 기타 이사장 및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23조(이사회 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u>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u> 10. 기타 이사장 및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 의결주문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조건을 개정하고 향후 동 법률이 개정되면 인사규정의 개정 없이도 적용하고자 하며,
- 동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 조건 개정(안 제37조)
 - 현 행 : 휴직 신청당시 3세 미만의 자녀
 - 개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 ※ 현행법 : 휴직 신청당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관련 법률에 따라 직원이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37조의2)

4. 시 행 일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8. <u>자녀(휴직 신청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u></p> <p>9. ~ 11.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37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라 <u>육아휴직을 신청한 때</u></p> <p>9. ~ 11. (현행과 같음)</p> <p>제37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원장은 직원이 원하는 경우 제37조제8호의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할 수 있다.</p>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1. 의결주문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의하고 퇴직금 지급기준 개정

3.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정의(안 제3조, 제4조, 제5조)
 - 현행 ‘월평균보수액’ 규정을 관련 법률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개정

4. 시 행 일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월평균보수액이라 함은 퇴직 당일 이전 1년간 지급된 보수총액의 12분의 1을 말한다.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u>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u>
<p>제4조(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의 지급액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u>1개월분의 월평균보수액</u>으로 한다.</p>	<p>제4조(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의 지급액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u>30일분의 평균임금</u>으로 한다.</p>
<p>제5조(특별공로금) ① 퇴직하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 당시 월평균보수액의 200%이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특별공로금) ① 퇴직하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 당시 <u>평균임금</u>의 200%이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1. 의결주문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실에 부합하게 복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미사용 연차휴가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저축제 신설(안 제21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시 공가 부여 근거 신설(안 제24조)
- 임산부 보호 근거 신설(안 제25조2, 제26조)
 - 현행 특별휴가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도록 관련 조항 삭제 및 신설
- 연차휴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1월 이상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단서조항 개정(안 제27조)

4. 시 행 일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제24조(공가) (생략) 1. ~ 4. (생략)</p>	<p>제21조의2(연차휴가의 저축) ① 원장은 직원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연차휴가 저축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연차휴가 저축제의 저축일수, 사용방법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p> <p>제24조(공가)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5. <u>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u></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제26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u>임신중의 여직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제25조의2(임산부의 보호) 원장은 임산부인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p> <p>제26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p>
<p>제27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7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차휴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공휴일을 산입한다.</p>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1. 의결주문

회계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공기업담당관-8619,2016.07.28.)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당한 계약조건 사용금지 근거 신설(제90조)
- 부당한 계약조건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계약서에 사용할 수 없는 10개 항목을 명문화하고자 함.

4. 시 행 일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90조(계약서의 작성) 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신 설〉</p>	<p>제90조(계약서의 작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당계약 조건 내용을 사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 용어 사용 2. 과업내용 해석 상 이견 발생 시 연구원 의 견 강요 3. 과업 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유 발생 시 계약금액 조정 협의 제한 4.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 적인 과업지시 5. 계약기간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 6. 포괄적,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7. ‘그 밖에 연구원이 요구하는 사항’ 등 포 괄적 과업지시 8. 계약진행 중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모든 책임 전가 9. 산출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 부담 10. 협상계약 제안서심사위원회 평가결과 비 공개